##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839

발의연월일: 2020. 11. 2.

발 의 자: 추경호・임이자・金炳旭

송언석 · 김희국 · 이종배

윤창현 · 김용판 · 정희용

이채익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시중 유동성이 생산적 분야보다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반면, 벤처기업 등 생산적 부문에 대한 투자는 크게 확대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업이 보유한 풍부한 유동성이 벤처투자 등 생산적 분야로 흘러가게 물꼬를 터줌으로써, 대기업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벤처투자를 촉진하고, 대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여 벤처생태계의 질적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대기업집단이 소액의 자본만을 가지고 금융을 활용하여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장함으로써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벤처투자로 유도하면서, 대기업집단에 대한

경제력 집중이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제한을 두면서 일반지주회사가 벤처캐피탈 회사를 보유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 융업자(이하'기업형 벤처캐피탈'이라 한다)를 보유하도록 허용하도록 하고자 함.

구체적인 제약 요건으로, 지분보유 요건은 「금융지주회사법」과 동일하게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 지분의 40%(상장기업의 경우 20%) 이상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투자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며, 펀드 조성시 타인 자본이 7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지배력을 과도하게 확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 계열사 및 기업집단 동일인·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투자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자 함(안 제8조의2제8항 및 제9항 신설).

#### 법률 제 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5호 본문 중 ""一般持株會社""를 ""일반지주회사""로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제2항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의 모든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일반지주회사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기업형 벤처캐피탈"이라 한다)의 주식을 소유할수 있다.
- 1.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 (해당 기업형 벤처캐피탈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상 소유할 것
-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상 투자의무를 준수하는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이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투자의무를 준수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일 것
- 3.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조성 시 지주회사의 계 열사 또는 자기자본을 제외한 타인자본의 비율이 100분의 70을 초

과하지 않을 것

- 4. 동일인 및 직계가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을 것
- 5. 기업형 벤처캐피탈이 속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에 투자하지 않을 것
- 6. 여타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에 투자하지 않을 것
- ⑨ 제8항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형 벤처캐피탈의 투자현황, 출자자현황, 투자내역, 자금대차관계, 특수관계인 거래관계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8條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	第8條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
한 등) ① (생 략)	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持株會社는 다음 각 호의	2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金融持株會社외의 持株會社	5
(이하 <u>"一般持株會社"</u> 라 한	<u>"</u> 일반지주회사"
다)인 경우 金融業 또는 保險	
業을 영위하는 國內會社의	
株式을 所有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	
에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	
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	
할 수 있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⑧ 제2항제5호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아래 각 호의 모든 조
	건을 충족할 경우 일반지주회
	시느 「베워트가 초지에 과하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 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 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 자(이하 "기업형 벤처캐피탈" 이라 한다)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 1.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 벤
  처캐피탈 발행주식총수의 10
  0분의 40(해당 기업형 벤처캐
  피탈이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100분
  의 20으로 한다) 이상 소유할
  것
-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상 투자의무를 준수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투자의무를 준수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일 것
- 3.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

   사업투자조합의
   조성
   시
   지

   주회사의
   계열사
   또는
   자기

   자본을
   제외한
   타인자본의

   비율이
   100분의
   70을
   초과하

   지
   않을
   것

<신 설>

- 4. 동일인 및 직계가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을 것
- 5. 기업형 벤처캐피탈이 속한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에 투자하지 않을 것
- 6. 여타 공시대상기업집단 또 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에 투자하지 않을 것
- ⑨ 제8항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형 벤처캐피탈의 투자현황, 출자자현황, 투자내역, 자금대 차관계, 특수관계인 거래관계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